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**2021.2.18.(목) 조간**	배포	2021.2.17.(수)

책 임 자	금융위 FIU 제도운영과장 주 홍 민(02-2100-1750)	**담 당 자**	김 천 현 사무관 (02-2100-1753) 박 재 오 사무관 (02-2100-1754)
	금융위 FIU 기획행정실 팀장 오 화 세(02-2100-1730)		고 선 영 사무관 (02-2100-1741)
	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(代)박 용 운(02-3145-7502)		자금세탁방지기획팀장 박 용 운(02-3145-7502)

제 목 :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.

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문의 (금융정보분석원 : econs@korea.kr, 02-2100-1741)

◈ 신고 및 접수 관련 문의 (금융정보분석원 : 02-2100-1752·1755·1758, 금융감독원 : 02-3145-7504)

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*이 개정(**2020년 3월 24일**)되어 오는 3월 25일에 시행됩니다.

*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○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,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.

☞ 이에 새롭게 법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해드립니다.

1 신고 개요

□ **가상자산사업자**는 금융정보분석원(이하 FIU)에 **신고서 및 첨부서류**를 **구비**하여 **신고**해야 합니다.(법 §7)

○ **(대상)**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**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**를 **영위하던 사업자*** 또는 **신설 사업자**입니다.

*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('21.3.25~'21.9.24)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○ **(수리요건)**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,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,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**일정 요건**을 **갖추어야** 합니다.

2 신고 절차·방법

1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의 **필수기재사항, 첨부서류** 등을 **구비**하여 FIU에 **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2 FIU는 신고서 접수 후 **금융감독원**에 **심사 의뢰*** 합니다.

*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.(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 §12조의7)

3 **금융감독원**은 **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**를 **심사**합니다.

4 **금융감독원**은 **심사결과**를 FIU에 **통보**합니다.

수 FIU는 **신고 수리 여부**를 **결정**하여 **통지·공고**합니다.

<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>

*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**3개월(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)** 이내에 **신고 수리여부**를 **통지**합니다. 단,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**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**됩니다.

6 신고업무의 절차·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의 사항 안내 >

❶ 신고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전 문의(econs@korea.kr / 02-2100-1741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❷ 현재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,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별첨]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